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law

The Legal Problem of using Credit Card in the Electronic



Chun-Gil Choi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February 2003

71-1
8-1/2
12
1/2

법학석사 학위논문

전자결제방법에 있어서 신용카드 사용의 법적 문제

지도교수 최 명 구

이 논문을 법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최 춘 길

최춘길의 법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2년 12월 26일

주 심 법학박사 박 정 기



위 원 법학박사 최 명 구



위 원 법학박사 고 명 식



<제 목 차 례>

제1장 序 論	1
I. 研究의 目的	1
II. 研究의 範圍 및 方法	2
제2장 電子商去來(EC)의 理解	3
I. 電子商去來의 意義	3
1. 電子商去來의 概念的 要所	4
2. 電子商去來의 概念定意	5
II. 電子商去來의 類型 및 構造	7
1. 電子商去來의 類型	7
2. 電子商去來의 構造	10
III. 電子商去來의 社會的 技能	11
1. 電子商去來의 長點	12
2. 電子商去來의 短點(問題點)	14
IV. 電子商去來의 現況과 未來	16
V. 電子商去來의 特性과 電子結制	17
제3장 電子商去來에서의 電子決濟	18
I. 電子商去來에서의 電子決濟의 意義	18
II. 電子決濟 시스템의 種類	19
1. 電子貨幣型 시스템	19
2. 電子手票型 시스템	19
3. 신용카드형 시스템	20
4. 電子資金移替型 시스템	20
III. 電子決濟의 問題點과 對應方案	21

제4장 신용카드에 의한 電子決濟와 그 法的 問題點	23
I. 신용카드에 의한 電子決濟 意義	23
1. 신용카드의 概念	23
2. 신용카드의 機能	24
3. 신용카드의 類型	25
II. 電子決濟로서의 신용카드형 시스템	26
1. 신용카드決濟시스템의 特性	26
2. 신용카드決濟시스템의 類型	27
III. 신용카드決濟의 法的 性格	29
1. 카드會員과 카드加盟店 사이의 관계	30
2. 카드業者와 카드加盟店 사이의 관계	30
3. 카드業者와 카드會員 사이의 관계	31
IV. 인터넷상 신용카드決濟의 法的問題	32
1. 신용카드정보 濫用의 危險	32
2. 카드會員의 指示撤回	36
제5장 신용카드에 의한 電子決濟의 信賴性 確保方案	38
I. 電子商去來事業者의 要件強化	38
II. 電子支給決濟代行業者 役割	40
1. 電子支給決濟代行業者의 概念	40
2. 電子支給決濟代行業者의 役割	40
III. 신용카드決濟에서의 電子署名의 擴大	41
1. 暗號化된 신용카드의 使用擴大	41
2. 電子署名을 이용한 신용카드決濟의 法的問題 解決	42
IV. 電子認證에 의한 신용카드決濟	47
1. 電子認證의 必要性	47
2. 신용카드에 의한 電子決濟시 電子認證의 必要	48
제6장 結論	49
< 참고 문헌 >	53

The Legal Problem of using Credit Card in the Electronic Payment System

Chun Gil Choi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Electronic Commerce(EC) may be defined as the entire set of process that support commercial activities on a network and information analysis. These activities spawn product information and display events, service, providers, consumers, advertisers, support for transactions, brokering systems for a variety of services and actions, security of transactions, user authentication, etc. Developments in information technologies in recent years have enabled major advances in several areas, including electronic commerce. EC has experienced an explosion due to the convergence of these technological developments, the merging of the telecommunications and computing industries, and the appropriate business clim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d and resolve legal problem on Electronic Payment System focused, Electronic Cash, Electronic Funds transfer, Electronic Check, and Electronic Payment by Credit Card in credit card in Electronic commerce. There are 4 method in Electronic Payment System.

This thesis clarified the concept of credit card based on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electronic payment system. First of all I classified the sorts and uses of credit card in domestic market, then studied the market potential and the desirable direction of it in connection with the financial system.

This stud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urgent effort to avoid the possibility of forgery and to assure the security. Furthermore it is necessary for us to attain a public confidence and trust of credit card to arrange a legal, structural system. To promote the electronic commerce we should also protect the secrets of trading parties and avoid the fraud and the illegal trade. Consumers want the accurate information of goods, the guarantee of quality and the anonymity in business. Sellers want the identity of consumer and the guarantee of payment. The third parties like bank want the credit standing of consumers and sellers and the dealing records of both. And all of them want the easiness and speed of electronic commerce. In consideration of these conditions the credit card is the most convenient form, but in the face of security problem it is desirable, this thesis concludes, that we should level up the safety through the procedure of electronic signature and electronic certification using the complex password system.

제1장 序論

I. 研究의 目的

현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류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도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인터넷이라는 전세계적인 네트워크의 발전은 다른 그 어떤 분야보다도 혁신적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거래분야에 있어서 인터넷이 활발하게 이용됨에 따라 사람과 사람이 물리적인 매체의 전달을 통해 상품을 사고 파는 전통적인 상거래보다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라는 전자적인 매체를 통해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 즉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는 기존의 도·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되는 거래시스템에 비해 도·소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되기 때문에 유통과정이 단순하고 제품의 가격이 더 저렴하며, 인터넷은 24시간 접속이 가능하고 전세계에 걸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어 기존의 점포와는 달리 언제 어느 때라도 전세계의 제품을 거래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와의 1대1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종목과 수량 및 이용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 후에는 대부분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와 같이 거래형태가 기존의 거래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발달함에 따라 지급결제제도도 전자적 결제방식으로 대체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자결제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고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주로 금융기관이나 카드발행자가 정한 약관 또는 그들 사이의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일반 사법은 전자결제를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기에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다, 또 전자결제에 관한 약관은 전자결제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결제의 방법 특히 신용카드를 사용한 결제방법과 그에 따른 법적 문제점등을 살펴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研究의 範圍 및 方法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적 결제방식으로는 기존의 신용카드번호 등의 재무정보를 전송해서 결제하는 방법, e-cash, Cyber Check 등의 전자화폐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인터넷 즉 Cyber Space(가상공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점이 존재하며, 그 특성으로 인하여 더 쉽게,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 즉, 온라인 신용카드지급에는 적용법규, 기초적 법률관계, 무권한거래, 제도적 장애에 대한 책임 등이 문제되고, 전자화폐에 관하여는 발행계약의 법적 성질, 지급지시의 철회, 지급완료의 시점, 지급의 효력, 전자화폐거래의 하자, 분실·도난과 부정사용, 위조·변조와 손실부담, 제도적 장애에 대한 책임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결제제도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결제방법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와 세계각국 및 우리나라의 법령 및 제도에 관하여 각종 국내외 문헌과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 고찰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전자상거래상의 신용카드결제방법에 대한 문제점 및 입법론을 논거하였다.

제2장 電子商去來(EC)의 概觀

I. 電子商去來의 意義

전자상거래(EC : Electronic Commerce)라는 개념은 컴퓨터가 일상생활에서 상용화되고 난 후 최근에 컴퓨터의 용도가 거래수단으로 발전됨에 따라 발생되게 되었다.

Commerce의 원래적 의미는 기업과 기업의 상거래를 의미하는데,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컴퓨터 네트워크의 확산에 따라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과 기업사이에 단지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의 제품개발과 수요자의 발굴에 이르는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형성되면서 Electronic Commerce라는 용어가 범용화되기 시작하였다.¹⁾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개념·정립하기는 매우 어렵고, 아직까지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① 전자문서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등의 전자적인 수단을 토대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거래²⁾ ② 2개 이상의 기업간의 사업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일련의 통합적 전자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행위³⁾ ③ 광의로는 문서, 기술데이터, 비즈니스 정보의 교환에 있어서 국제표준을 적용하든, 독자적인 표준을 적용하든 전자데이터 형식으로 행하는 상거래 행위이고, 협의로는 EDI표준을 통한 상거래 행위⁴⁾ ④ 기업·정부기

1 김윤명,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구현의 제반과제”, 「사이버스페이스 포럼」, 1997, 6면, http://user.chollian.net/~infolaw/ec_0.1.html.

2 김영갑·최성준, “정보사회에 대비한 상사법 연구 서설”,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I)(과천시:통신개발연구원)」, 1997, 142면.

3 홍준형, “인터넷 사회에 있어서의 EDI 및 전자거래의 기능”, 「전자거래 및 EDI 관련 법 제도 정비방향(서울:한국전산원)」, 1996, 16면.

관과 같은 독립된 조직간 혹은 조직과 개인간에 다양한 전자적인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방식⁵⁾ ⑤ 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상에서 상거래를 행하는 새로운 마케팅 수법⁶⁾ ⑥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 장치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⁷⁾ ⑦ 양 당사자 모두 컴퓨터 및 쌍방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망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법률행위 또는 그에 따른 이행을 하는 거래⁸⁾ ⑧ 전자상거래란 EDI, 인터넷, PC통신, 전자우편,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통신망을 이용한 가상기업 등을 통한 일반적인 거래활동을 말한다.⁹⁾

1. 電子商去來의 概念的 要所

전자상거래라는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¹⁰⁾

첫째, 컴퓨터를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표시 및 전달수단으로 하는 것을 최소한도의 요건으로 한다. 당사자 중에서 일방만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상대방은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에 포함되지 않으며, 컴퓨터 이외의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자상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심충건, “손에 잡히는 CALS”, 「정보시대」, 1996, 157면.

5 한국전산원, “CALS/EC 도입·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서울:한국전산원), 1996, 12-13면.

6 原田 保, 寺本義也, “インタネシト時代電子取引革命”, 「東洋經濟」, 1996, 12면.

7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미래」, 1998, 9-10면.

8 오병철, “전자거래의 민사법적 규율방안”, 「정보사회에 대한 일반법 연구[11]」, 1998, 요약문.

9 정완용,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법제의 검토와 입법방향”,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서울:국회가상정보가치 연구회), 1997.4.22, 85면.

10 오병철, 전제논문, 51-52면.

둘째, 컴퓨터와 컴퓨터가 망으로 연결되어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사 전달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디지털화하여 디스켓에 기록한 후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컴퓨터로 읽고 전자서명을 하여 다시 상대방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없다.

셋째, 계약의 체결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기존의 자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계약의 이행을 컴퓨터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에도 전자상거래에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컴퓨터와 컴퓨터망의 하드웨어와 각각의 컴퓨터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와 전송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있고, 양 컴퓨터간의 정보 전달을 위한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2. 電子商去來의 概念定意

전자상거래란 좁은 의미로는 ‘사람과 사람이 물리적인 매체의 전달을 통해 상품을 사고 파는 전통적인 상거래와는 달리 컴퓨터와 네트워크라는 전자적인 매체를 통해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기업내 혹은 기업과 기업간 거래관계의 모든 프로세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¹¹⁾

즉 기업, 개인, 정부간의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컴퓨터 및 통신망을 이용하여 교환하고 거래하는 방식이다. 좀더 자세히 나누어 설명하면 아래의 세가지 측면에서 전자상거래를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의 전자상거래는 정보의 전달, 상품과 서비스의 배달, 지불까지의 과정이 모두 전자적인 매체를 통해

11 한국전자거래협회 자료실, <http://www.kcals.or.kr/concept.asp/>

이루어지는 거래 활동이다.

둘째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에서의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상거래 업무 처리과정을 자동화하여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정확성 신속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셋째로 서비스 측면에서의 전자상거래는 위의 두가지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간 유통마진을 최소화하여 고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추구한다.

위와 같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전자상거래는 여러 형태로 정의될 수 있으며, 한가지 공통적인 것은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4호), 여기서 전자문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제2조 제1호).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제 9편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신설하면서, commerce보다 넓은 의미로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용어를 “계약 성립의 일반적 단계로 전자메시지로서 행해지는 거래”라고 하였다. 미국 샌디에고 대학의 슈나이더(Schneider)와 페리(Perry) 교수는 전자상거래를 www(world wide web)이라는 인터넷 부분에 기초한 거래이며, 사업과정을 추가하거나 이행하는 전자자료 송수신 활용거래라 하면서, 인터넷 상거래(Internet commerce)라고도 불렀다.¹²⁾

국제연합 국제거래법 위원회(UNCITRAL)는 세계에 권고하는 전자상거래 표준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에

12 Gray Schneider, James T. Perry, “Electronic Commerce”,
「Thomson Learning」, 2000, pp. 2-8.

서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면서, “데이터 메시지 형태의 모든 정보를 이용하는 상거래 활동”이라고 보았다.¹³⁾(This law applies to any kind of information in the form of a data message used in the context of commercial activities)

이외의 전자상거래의 정의를 보면,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시스템 하에서 계약을 비롯한 각종 법률행위 또는 그에 수반하는 부수적인 행위가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¹⁴⁾이라고 하던지, “양당사자 모두 컴퓨터 및 쌍방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망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법률행위 또는 그에 따른 이행을 하는 거래”¹⁵⁾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본 개념들과 비교하여 좀 더 법률행위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등을 비롯한 네트워크와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발생한 새로운 상거래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홍보, 안내서의 비치 및 열람, 견적서의 작성, 주문 및 계약성립의 확인, 결제, 기업내부의 주문접수처리, 고객서비스 등 개인과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비즈니스과정 전체를 전자화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상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다.¹⁶⁾

II. 電子商去來의 類型 및 構造

1. 電子商去來의 類型

전자상거래는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에 따라

13 정윤희, “전자상거래 지불 시스템과 인증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논문」, 2002, 8면.

14 김진환,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문서성과 서명성에 관한 고찰”, 「법조」 1999. 8, 119면.

15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1999, 29-32면.

16 최경진, 전제서, 55면.

그 유형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¹⁷⁾

① 기업간(B2B: Business-to-Business) 전자상거래는 무역, 물류 등의 부문에서 보듯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 VAN)을 이용한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에 의한 정형화된 절차와 서류 중심의 폐쇄적인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의 보급 확산에 따라 확장성 표시언어인 XML¹⁸⁾을 기반으로 전자조달(e-Procurement)¹⁹⁾, e-마켓플레이스²⁰⁾, 기업의 소모성 물품구매(MRO)²¹⁾ 등 다양한 B2B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굴뚝산업형 제조기업들도 인터넷환경으로 변화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② 기업과 개인간 전자상거래(B2C : Business-to-Customer)는 인터넷을 통해 기업과 개인 소비자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검색 및 판매, 대금결제 등의 상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인터넷뱅킹, 증권사이트, 공연·여행 관련 예약, 인터넷방송, 인

17 김진우·HCL Lab, “인터넷 비즈니스.COM”, 「영진출판사」, 1999, 86면 이하.; 심상렬, “사이버 무역의 비즈니스 모델 현황 및 전망”, 「2000년 하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한국통상정보학회)」, 2000.6, 7-9면.

18 1996년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제안하였다. HTML보다 홈페이지 구축 기능, 검색 기능 등이 향상되었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복잡한 데이터 처리를 쉽게 한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가 웹에 추가할 내용을 작성, 관리하기에 쉽게 되어 있다.

이밖에 HTML은 웹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처럼 구조화된 데이터를 지원할 수 없지만 XML은 사용자가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뜻대로 조작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XML 문서들은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 문서 형식을 따르고 있다. XML은 SGML의 부분집합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응용판 또는 축약된 형식의 SGML이라고 볼 수 있다. 1997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社)와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사(社)가 XML을 지원하는 브라우저 개발을 하고 있다.

19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부품과 원자재의 조달과 관련한 1개 구매기업 대 다수 판매기업관계이다.

20 불특정 복수기업, 즉 다수 판매기업 대 다수 구매기업관계이며, 수직적 및 수평적 형태가 있다.

21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는 기업활동의 유지, 보수, 운영과 관련한 소모성 물품 및 자재의 구매 중개모델을 말한다.

터넷신문, 경매사이트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쇼핑물은 대표적인 기업과 개인간 전자상거래로서 단순 쇼핑물, 백화점식 종합 쇼핑물, 전문 쇼핑물, 물앤몰스, 쇼핑물 호스팅 등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월 일정액을 받고 쇼핑물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CSP(Commerce Service Provider) 및 다양한 업무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③ 기업과 정부간(B2G : Business-to-Government)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EDI 등의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부조달, 각종 세금 부과 및 납부, 수출입절차 및 통관업무,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조달청, 국방부 등의 정부조달 및 무역자동화 사업 등이 그 표적인 예이다.

④ 개인과 정부간(C2G : Customer-to-Government) 전자상거래는 정부와 국민간에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 각종 세금부과 및 납부, 사회복지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전자상거래 모델에 비해 활성화가 덜 된 상태이지만, 전자정부구현정책등이 현재 실현중에 있으므로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다.

⑤ 개인과 기업간(C2B : Customer-to-Business)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주도권을 쥐고 자신이 원하는 가격조건 등을 충족시키는 기업에게 주문을 하는 역경매 사이트가 대표적인 예이다.

⑥ 개인과 개인간(C2C : Customer-to-Customer) 전자상거래는 경매나 벼룩시장 사이트처럼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공급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자끼리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여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P2P(Peer-to-Peer) 컴퓨팅 기술이 발달하면서 소프트웨어, 전문기술과 지식 등을 사고 팔 수 있는 e-마켓플레이스도 등장하고 있다.

2. 電子商去來의 構造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 실현을 위한 시스템 및 이용환경 구축, 전자계약의 체결, 전자인증, 전자결제, 운송의 5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²²⁾

(1) 전자상거래 구현을 위한 시스템 및 이용환경 구축

서비스 제공자측의 기업은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쇼핑몰이나 거래를 위한 홈페이지의 운영 등을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구축은 대개 서버로 이용될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구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소비자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보유하여야 한다.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와 같은 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2) 전자계약의 체결

소비자가 기업에서 개설한 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자상거래는 성립된다.

(3) 전자인증

소비자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양 당사자가 표시한 정보만을 가지고는 진실한 거래 상대방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이 때 계약 체결을 위한 정보를 전송한 상대방이 진실한 거래당사자인지를 확인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전자 인증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나 전송한 정보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래당사자 이외의 기관을 제3자 신용기관(TTP : Trusted Tird Party) 또는 전자인증에 있어서의 TTP인 인증기관(CA : Certificate Authority)이라고 한다.

22 최경진, 전제서, 56-59면.

(4) 전자결제

계약이 체결되면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기업에게 주어야 한다. 이 때 직접적인 현금결제를 대체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자결제이다. 전자결제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의 카드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방법, 전자자금이체로 결제하는 방법 등이 있다. 현재 인터넷상거래에서 이용하는 가장 대중적인 전자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자금이체이다.²³⁾

(5) 운송

전자적인 방식으로 된 데이터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경우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다운로드하거나 계약조건에 따라 소비자가 필요할 때에 전송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물로 된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기업으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때 구입한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각종 우편서비스나 택배를 이용한다.

III. 電子商去來의 社會的 機能

전자상거래는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사이버마켓을 구성한다. 사이버마켓이란 “사이버스페이스(Cyber Space) 내의 시장, 즉 상품의 홍보·전시·판매·결제·고객서비스 등이 경제활동을 하는 인터넷 내의 가상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사회적 기능은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과 결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많은 사회적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있다.

23 윤한성·이재규, “Intelligent Agent Based Virtually-Defaultless Check System : Safe Check System”,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 Commerce(서울 ; 국제전자상거래 센터)」, 1998, 224면.

1. 電子商去來의 長點

(1) 저렴한 가격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보안과 신뢰성 보다 상품가격이다.²⁴⁾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이다.

(2) 시간적·공간적 제약의 해소

사이버마켓에서의 쇼핑물을 운영할 경우에는 곧바로 국제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외국 사람들과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거리의 장벽을 제거하여 시장활동영역을 확대시켰다. 또한 사이버마켓에서는 판매자가 시간의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담당자가 없더라도 24시간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는 늦은 밤에도 원하는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²⁵⁾ 특히, 업무 때문에 쇼핑의 기회를 접할 수 없는 직장인에게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시간의 절약은 개인의 여가활동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3) 주문자 중심의 서비스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기초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게 해주며, 다양한 물품의 제시로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능화된 에이전트(Agent)를 이용하면 비교 쇼핑도 가능하므로 이용자는 보다 저렴한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²⁶⁾

24 주피터 커뮤니케이션과 NFO인터랙티브의 조사에 따르면, 77% 이상의 브라우저와 64% 이상의 비구매자들이 온라인에서 더큰 폭의 할인판매가 있다면 구매를 할 것이라고 답하였다.(허금, 「국내쇼핑몰 사업의 현실」, 「경영과 컴퓨터」, 1999, 23면.)

25 최경진, 전게서, 19-21면.

26 특히 에이전트기술의 발전은 인터넷상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순간적인 정보의 제공을 한다. 이 기술은 컴퓨터공학에서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연구되고 있고,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많이 활용하는 분야가 야후, 알타비스타, 심마니 등의 정보검색사이트에서 활용하는 정보

그리고 인터넷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은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쇼핑 물인 경우는 바로 상점으로 이동되고, 다른 광고일 경우에는 관련 정보와 담당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설문조사 등이 연결되게 된다.²⁷⁾

(4) 시간과 비용의 절약

전자카탈로그나 전자사양서 등은 인쇄하거나 정리하여 창고에 보관하거나 우편으로 우송하지 않아도 되고, 제품정보의 변경을 위해서 재인쇄하여 배포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직접 변경이 가능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특히 기존의 인쇄매체나 방송매체 등에 의할 경우 마케팅정보의 양이 많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범위가 넓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비용이 증가하지만, 사이버마켓에서는 예상소비자의 범위에 관계없이 정보제공을 위한 비용은 일정하다. 또한 검색에 대한 수치적 검증이 가능하여 직감적인 마케팅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절약된다.²⁸⁾

(5) 참여의 제약해소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에는 인종, 성별, 사업의 규모, 회사의 규모 등의 차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터넷의 개방성으로 인하여 사이버마켓에는 대규모 회사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와 소규모 자본만을 갖춘 중소기업 및 개인도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참여의 제약해소는 사이버마켓을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환경으로 만들 수 있고, 우량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소비자의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다.

검색 에이전트들이고 지능화된 색인 작업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용자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의 접근점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김윤명,전개논문,12면.http://user.chollian.net/~infolaw/ec_0.1.html).

27 최인영, “전자상거래혁명”, 「동일출판사」, 1998, 20면.

28 공형진·김영철, “전자상거래의 민사법적 문제”, 「동의법정 제15편」, 1999, 177면.

예컨대,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나 품질이 좋은 와인을 생산하는 캘리포니아의 와인업자가 인터넷상에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그곳에 자신의 농장에서 생산하는 와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실으면 전세계의 관심있는 소비자는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 취향대로의 와인을 고르고,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을 하여 이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유통과정도 생략할 수 있다.

(6) 재고와 경비의 감축

기업은 필요한 상품만 주문함으로써 재고와 경비를 감축할 수 있고, 가상공간에 진열함으로써 상품진열장에 투자되는 비용도 소비자에게 환급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상가에 대한 쇼핑은 많은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이동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는 환경오염을 가져오지만, 전자상거래는 이를 극복할 수 있다.²⁹⁾ 그리고 주문은 소량화·빈번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각 계약의 가액이 축소되고 분쟁이 감소한다.³⁰⁾

(7) 정보사회 발전에 기여

정보고속도로를 통한 정보의 유통과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정보로서 개체화될 전자상거래에서 유통되는 물품에 대한 접근기회는 정보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³¹⁾

2. 電子商去來의 短點(問題點)

전자상거래는 민간 및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 실물 및 자본시장의 효율성제고, 정보관련 사회비용의 절감 등을 통한 국가 및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사회, 경제적 혼란 및 각종 역기능적 장애요인들을 수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³²⁾

29 김윤명, 전제 논문, 7면.

30 Jinee Kim Wilde, "Contract And Licensing Trade", 「제4회 KITAL 정기 국제심포지움-사이버시대의 법적 환경-」, (서울 : 기술과 법 연구소), 1999, 91면.

31 김윤명, 상제 논문, 9면.

첫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물류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통신판매자의 역할이 단지 중개자에 불과하고, 수입업자 및 국내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수입업자, 통신판매자가 상품의 품질과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공동보증책임을 확립하여 소비자를 이중을 보호하고, 구입처, 구입방법 등 구입정보원의 폭넓은 제공을 통하여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필이나 인장 없는 거래시 카드도용 등 불법거래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명확, 주문배달기간의 지연, 카드회사나 전자화폐발행기관간의 협조체계 미비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화폐 등의 사용에 따른 관련 기관간의 업무통일의 법제화와 전자인증과 암호체계 등을 통한 자필이나 인장없는 거래의 보호가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불필요한 광고비용의 지출 등 통신판매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를 법정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사기 및 범죄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신종범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해커 등의 불법침입으로 인해 자료 등이 부정유출되거나 부정입수 되고 바이러스의 통신망 침입 등이 또한 빈번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보안시스템 및 제도 등이 계속적으로 정비될 것이 요구된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는 전세계 시장에서 가장 싸고 가장 마음에 드

32 정국환 등, “전자거래 및 EDI 관련 법제도 정비방향연구”, 「한국전산원」, 1996, 4면.

는 물건을 고를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것이기는 하나 위에서처럼 그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IV. 電子商去來의 現況과 未來³³⁾

우리나라 사람 10명중 6명은 2002년 9월 한달 동안 적어도 한번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코리아 클릭이 만 10세 이상 65세 이하 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9월말 기준으로 64.4%로 집계되었으며 이를 인구수로 환산하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는 2천 36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목적(복수응답)은 정보찾기가 89.7%, 이메일 81.7%, 게임 2%, 영화음악감상 58.8%, 뉴스신문 49.5%, 인터넷쇼핑 41%순으로 나타났는데, 2002년 2월 조사에서 30%였던 인터넷 쇼핑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구매경험이 증가된 것이다.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역시 오는 2006년까지 연평균 60%이상의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2001년 6천77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연평균 60.6%의 성장률을 보여 2006년에는 6조5천12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은 현재의 유선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에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무선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상거래가 이뤄지는 M-커머스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M-커머스시장은 2000년 7월 2천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006년까지 87%의 높은 연평균 성장율을 기록해 305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된다.

33 네이버 인터넷뉴스(2002년3월20일)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2102500000027085&s=4,1426,1528&e=82,1501,1600/.

V. 電子商去來의 特性과 電子決済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직접 거래와는 달리 컴퓨터 등을 통해 네트워크상에서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품을 직접 전달받을 수 없고, 또한 화폐나 수표를 직접 지불할 수도 없다. 그러나 상품의 경우는 택배등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으나 지급결제는 은행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기존의 결제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거래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자상거래에서는 네트워크라는 특수한 공간 속에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교환수단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불수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거래에 있어서 지급결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거래의 안전이 확보되며, 낮은 거래비용으로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지불방식은 많은 변화를 겪으며 발전하고 있다. 그 발전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최초의 전자상거래 지불방식은 무통장 입금을 통한 지불결제방식에서 시작하여, 다음으로 보안장치없는 신용카드결제가 시행되었고 암호방식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거쳐 신뢰성있는 제3자 브로커 시스템과 전자화폐에 의한 지불결제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전자결제방식은 그 유형도 다양하게 분류되어지나 전자거래 금액에 따라 소액결제 경우에는 전자화폐를 이용한 방식이 사용되고 고액거래의 경우에는 신뢰성 있는 제3자를 통한 신용카드기반의 지급결제시스템, 즉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와 같이 보안문제가 해결된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제3장 電子商去來에서의 電自決濟

I. 電子商去來에서의 電自決濟의 意義

전자결제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금결제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개방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결제라고 정의하고 있다.³⁴⁾ 전자결제에는 먼저 이상적인 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의 지불방식으로 생각되고 있는 전자현금(화폐) 시스템, 신용카드 거래를 인터넷상에서 구현한 인터넷 신용카드 지불 시스템, 장표 결제 수단중의 하나인 수표를 인터넷상에 구현한 전자수표시스템, 마지막으로 순전히 전자지불을 위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인터넷상의 가상 은행을 이용한 전자자금이체등 크게 네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⁵⁾

전자결제 시스템은 인터넷상거래를 이용하여 가상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가상쇼핑몰과 계약이 체결된 은행간에 온라인을 통하여 결제대금이 지불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³⁶⁾, 간단히 정의하면 전자결제를 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 혹은 온라인으로 지급하는 어떤 방식³⁷⁾이라고 할 수 있고, 첫째, 암호방식을 이용하여 보다 안전한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거래당사자간에 신뢰성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보안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개인의 정보 및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소액결제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처리비용도 경제적이어야 한다.³⁸⁾

34 최석범, “전자결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仲裁學會誌」, 1998, 328면

35 성기윤, “인터넷전자지불시스템의 현황”, 「한국과학기술원 인터넷상거래 연구」, 2000, 1면.

36 윤광운 외2인, “전자상거래론”, 「삼영사」, 1999. 240면.

37 Andrew Dahl & Leslie Lesnick, “Internet Commerce”, New Riders, 1996, p.77.

38 한국전자상거래연구원 자료실, <http://www.ecclass.co.kr/eclecture3->

II. 電子決済 시스템의 種類

1. 電子貨幣型 시스템

전자화폐는 일반적으로 은행 기타 전자화폐 발행자가 카드 또는 컴퓨터시스템을 통하여 일정 화폐가치를 전자기호로 저장하고 그 지급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보통신회선을 통하여 자금결제에 이루어지는 화폐³⁹⁾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화폐라는 용어 자체는 법률용어는 아니고 그 기술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용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분히 여러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고 또 전자화폐의 종류와 발행방식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전자화폐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전자화폐형 시스템은 실제 사용되고 있는 화폐 형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실제 사용 방법과 특성을 같게 만든 것으로 주로 소액거래 시 사용되며, 익명성, 보안성, 휴대가능성, 양방향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⁴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화폐는 각종 가치저장카드(Stored Value Crd), 범용선급카드(Prepaid Card), 몬덱스사(Mondex)의 몬덱스카드, 사이버캐쉬사(Cyber Cash)의 사이버코인, 디지캐쉬사(Digi Cash)의 이캐쉬가 있다.⁴¹⁾

2. 電子手票型 시스템

전자수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로 된 수표를 그대로 인터넷 상에 구현한 것이다. 전자수표의 사용자는 은행에 신용계좌를 갖고

11.htm

39 韓國銀行資料, “電子貨幣의 影響과 對應方向”, 「時事金融」vo:12-3, 1996, 64면

40 권용오, “전자상거래에서의 법적인 문제점”, 「한국무역협회자료실」, 2000, 26면.

41 정진명, “電子貨幣의 法的 問題”, 「인터넷법률(법부부)」, 2001년 4호, 112면.

있는 사용자로서 제한된다. 이 시스템은 발행자와 인수자의 신원에 대한 인증을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⁴²⁾

전자수표는 전자화폐가 소액의 대금결제 등 실험적 운용에 머물고 있는 것과는 달리, 비교적 고액의 거래에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개발되고 있다. 즉 거래대금은 사용자의 카드에 저장된 지급보장한도의 일부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지급되며, 기존의 수표교환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은행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되어 수취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이는 전자화폐가 은행계좌의 잔액과는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한 점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전자수표도 종이수표처럼 부도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3. 신용카드형 시스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이란 기존의 신용카드 거래를 인터넷상에서 구현한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거래금액이 수수료 등의 거래비용보다 상대적으로 큰 상품의 매매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정보 전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의 보안상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암호보호기술이 많은 보안상 문제점을 극복하여 줌에 따라 현재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는 전자결제 시스템이다.

최근 Visa와 Mastercard 등이 공동으로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이라는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거래비용을 줄이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전자 지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⁴³⁾

42 한국전자상거래연구원 자료실, <http://www.ecclass.co.kr/eclecture3-11.htm>

43 손달호, “전자상거래에 있어 SET이론의 활용”, 「계명대학교 경영경제」, 1998, 31권 2호, 49면.

4. 電子資金移替型 시스템

인터넷상의 가상은행(cyber bank)은 최근 WWW(World Wide Web)을 기반으로 생겨나고 있다. 가상은행이란 물리적인 지점, 본점을 운영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웹 상에서 사용자와 연결함으로써 운영되는 은행을 말한다. 전자 자금이체는 현재도 홈뱅킹이나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 Automatic Teller Machine)로 가능하나, 인터넷상의 웹 기반에서 가상 은행의 전자자금이체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수수료가 적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인터넷상에서만 운영되는 최초의 가상은행인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에서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이체를 이용한 전자지불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⁴⁴⁾

III. 電子決濟의 問題點과 對應方案

현재까지 전자결제는 아직 전자상거래가 초기단계에 있었던 관계로, 최대한 고객을 끌어 모으는 것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정보의 유출을 막고 불법적이 변조나 위조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사용자의 친숙도를 고려하여 실제 세계에서 사용되던 결제방식과 형태나 사용절차가 아주 유사한 결제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인터넷에서의 전자결제방식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기존의 경제환경과 다르다는 점에서 오는 이점을 잘 살린 처리절차를 가진 방식으로 재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결제방식들이 통합되어 상인과 고객간에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상품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4 이재규·양철영, “전자상거래와 IC카드 통합서비스”, 「컴퓨터월드」, 1997, 6월호, 64면.

전자상거래상에서의 전자결제시스템은 보안문제 해결이 가장 주요한 해결과제이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며, 소비자 역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개된 구조를 갖는 인터넷의 특성상 상품대금의 지불을 위한 결제과정은 결제정보의 비밀유지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자적 결제정보들은 외부에 완전히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인터넷에서의 전자상거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결제의 표준화와 인증제도의 정착화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일례로 하이브리드형 전자결제시스템인 SDT(Secure Debit Transaction)프로토콜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 한빛은행에서 서비스할 예정인 전자결제시스템의 도입의 확대를 꾀하고, 표준으로의 채택 등의 검토 및 지원도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표준화 추진, 즉 전자상거래 기술적 혼란을 방지하고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며, 민간 기업의 참여와 국제동향 및 시장추세에 따른 표준화 추진, 즉 기술개발을 통하여 전자결제시스템의 표준화를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만이 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가능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든 믿고 거래를 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구축한 SSL 또는 SET보안체계등 미흡한 부분의 보완 및 정착이 더 필요하다.⁴⁵⁾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 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안심하고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할 수 있는 소비자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책과 매스컴의 인식전환의 유도과 국민의 소비패턴의 변화가 결국 전자결제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45 윤명길, “국내인터넷 쇼핑물의 전자결제 유형 분석”, 「한국마케팅학회」, 1999, 14면.

제4장 신용카드에 의한 電子決濟와 그 法的 問題點

I. 신용카드에 의한 電子決濟 意義

1. 신용카드의 概念

신용카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각국이 입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보면 통일소비자신용법전(Uniform Consumer Credit Code)은 “신용카드란 카드발행인이 카드소지인에게 그가 상품, 용역을 구입, 임차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기타 필요한 일에 있어서 카드발행인 또는 제3자로부터 신용을 받을 권한을 부여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에 발행된 카드 또는 기구”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고, 연방소비자신용보호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제1편인 Truth in Lending Act 제103조 (k)항에 의하면 “신용카드란 현금, 재산, 노동이나 서비스를 신용으로 얻기 위하여 제시함으로써 사용되는 카드, 판(plate), 쿠폰책(coupon book)이나, 다른 신용의 도구”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재정경제부로부터 신용카드업의 영업인가를 받지 않은 회사가 신용카드를 발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카드회사가 신청인의 신용상태를 근거로 신청인(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주고, 회원은 이 카드에 의하여 지정된 가맹점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신용구매하면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그 이용대금을 결제하며 회원으로부터는 일정기간 경과 후 이자없이(할부구매의 경우 별

도의 수수료 부담) 그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 같이 신용카드는 현금이나 수표와 같이 일종의 결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흔히 '프라스틱 머니' 또는 '제3의 통화'라고 불리고 있으며 무현금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급수단이 되고 있다.⁴⁶⁾

신용카드는 종래에는 소액의 대금을 지급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전자거래에 있어서도 대금을 결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거래에 있어서 신용카드 결제란 “신용카드회원이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카드가맹점에게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전송하여 결제하는 방법”을 말한다.⁴⁷⁾

2. 신용카드의 機能

① 신용카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게만 발행됨으로써 카드소지자의 신분확인이 가능하며 대금청구시 피청구자의 신분을 확인시키는 역할 및 구매자격을 식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② 신용카드는 현금이나 수표를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수표나 어음은 주로 본인의 주활동지역에서만 지급수단으로 통용이 가능하다는 장소적 제한이 있으나 신용카드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으며 현금에 비해 분실, 도난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③ 신용카드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는 현금서비스, 할부구매, 카드론등 신용과 연계된 소비자 신용의 확보기능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상품이 부족하여 사채의 의존도가 높았었는데, 신용카드의 등장으로 소액, 단기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

46 금융소비자 정보 시스템 자료실, http://bankcheck.co.kr/data_c/data9-1.htm

47 정진명, “인터넷상 신용카드 使用의 法的 問題”, 「인터넷 法律(法務部)」 2001년 제5호, 5면.

을 신용카드가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④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면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구입했는가가 모두 기록되는 등 정보수집이라는 부가적인 기능이 있다. 은행, 유통업체 업체들이 앞을 다투어 카드를 발행하는 것은 개인별 구매정보를 입수하여 고객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에서이다.

3. 신용카드의 類型

신용카드의 유형에는 거래대상자에 의한 구분, 발행기관에 의한 구분, 이용지역에 따른 구분, 정보매체 기능에 의한 구분등 여러 유형이 있지만 앞으로 살펴볼 전자결제로서의 신용카드시스템과 관련하여 거래대상자에 의해서만 신용카드의 유형을 설명하기로 한다.

① 양 당사자카드 : 카드회사와 카드소지자(회원)의 두 당사자만 존재하고 이들 사이에 하나의 법률관계만이 성립하는 카드를 말한다.

② 삼 당사자 카드 : 카드회사, 회원 및 가맹점의 삼자가 당사자로 존재하며 이들 사이에는 카드회사와 회원간의 회원계약, 카드회사와 가맹점간의 가맹점 계약 및 회원과 가맹점간의 원인행위(거래)에 따른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삼 당사자 카드는 3면적이므로 신용카드 특유의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제기된다. 즉 대금결제관계의 법적구조의 문제, 신용카드 당사자간의 항변권의 문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시 손실분담에 관한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한다.⁴⁸⁾

③ 다 당사자 카드 : 삼 당사자 카드의 변형으로 카드발행의 주체가 실제 카드를 발행하는 카드회사 및 그와 계약관계에 있는 은행

48 김경태, “信用卡去來의 法理研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 1997, 13면.

등의 기관으로 분담되는 카드를 의미한다. 다 당사자 카드의 경우 법률관계는 근본적으로 삼 당사자 카드와 같다.

II. 電子決済로서의 신용카드형 시스템

1. 신용카드決済시스템의 特性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의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재무 정보가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된다는 점 이외에는 기존에 이용하던 신용카드 결제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거래구조를 상정하여 만들어진 신용카드를 불완전하며 개방된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도 사용함에 따라 새로운 법률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예컨대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에 있어서 고객이 상인에게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줄 때 그 번호가 카드업자 또는 가맹점과 같이 권한있는 자가 아닌 타인에게 공개된다면 거래의 진정성이나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는 확보되지 못한다.

또한 신용카드거래는 카드정보의 전송 중에 거래금액이나 구입상품이 부당하게 변경되지 않을 것과 거래의 상대방이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진정한 권리자일 것을 요한다. 이에 반하여 상인의 측면에서는 카드정보를 전송한 자가 거래자격을 가진 진정한 당사자인지의 여부 및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⁴⁹⁾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정보의 안전에 대한 위험,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상거래업자에게 급부를 제공받기 전에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매출전표에 대한 서명 없이 신용카드의 재무정보만

49 孫咎華 “새로운 電子支給制度의 法律問題와 立法論”, 「情報社會에 대한 一般法研究(II), (情報通信政策研究員)」, 1998, 249면.

을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결제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와 상인간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그 유형과 법적성질을 분석하여 거래당사자의 법적문제와 그 해결책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2. 신용카드決済시스템의 類型

전자거래에서 지급결제에 이용되는 신용카드 처리방식으로는 제3자의 개입여부에 따라 카드가맹점이 직접 고객의 신용카드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제3자인 지급결제 중계기관(Payment Gateway)이 신용카드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1) 직접처리 방식

직접처리 방식은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정보를 카드가맹점에게 전송하면 카드가맹점은 기존의 신용카드거래 승인방법과 동일하게 카드거래를 승인받는 방식이다. 이는 다시 기존의 신용카드거래 승인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카드거래를 승인받는 일반적 방식과 신용카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정보를 암호화한 후 전송하는 암호화 방식이 있다.⁵⁰⁾

1) 일반적 방식

일반적 방식은 카드회원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를 표시하면서 카드가맹점에게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정보를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신용카드거래 승인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카드거래를 승인받는 방식으로 카드회원에게 그 사용이 익숙하며, 별도의 처리과정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암호화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 신용카드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과정에서 쉽게 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카드가맹점이 카드회원의 신용카드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 방식은 현재에도 일반 소비자

50 정진명, 전제 논문(인터넷상 신용카드 사용의 법적 문제), 5면.

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암호화 신용카드사용의 확대·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암호화방식

암호화방식은 카드정보를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고 이를 전송하여 결제하는 지급방법이다. 이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정보를 웹브라우저(Web Browser)나 전자거래 장비에 입력하였을 때 암호가 초기화되고 이와 같이 암호화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카드가맹점에 전송함으로써 결제된다. 이 방법은 안전한 지급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진정성, 무결성과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금융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유동성, 안정성, 보안성 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신용카드거래가 완전히 보호되기 위해서는 물건, 서비스, 대금의 이전이 실행되기 이전에 일련의 처리과정이 요구되는 문제가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암호화프로토콜로는 Netscape사의 SSL 프로토콜(Security Socket Layer Protocol)과 Master Card와 Visa International이 공동으로 개발한 SET 프로토콜(Secure Electronic Transaction Protocol)이 있다.

(2) 제3자 처리방식

제3자 처리방식은 신용카드거래를 처리하는 제3의 기관이 상인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용카드번호를 등록하게 하여 계좌번호(ID Number)를 부여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제하는 지급방법이다. 이는 다시 소비자의 의사를 제3자인 지급결제 중계기관이 전자우편으로 확인하는 방식과 신용카드정보를 암호화하여 기존의 신용카드거래 승인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카드거래를 승인받는 제3자 암호화 방식이 있다.

1) 전자우편 방식

전자우편 방식은 신용카드거래를 취급하는 제3의 기관이 고객과 상인에게 계좌번호를 부여하고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전자우편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한 후 기존의 신용카드거래 승인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카드거래를 승인받는 방식이다. 이는 소비자가 회원인 상인과 거래를 할 때 신용카드번

호 대신에 계좌번호를 사용함으로써 신용카드의 보안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소비자나 상인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소비자와 상인 양자가 거래를 위하여 동일한 제3의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의사 확인과정에서 소비자의 의사변경에 따른 법적 문제점이 있다. 현재 상용화된 전자우편 방식의 대표적인 결제방법으로는 First Virtual Holdings사의 First Virtual이 있다.

2) 제3자 암호화 방식

제3자 암호화 방식은 소비자와 상인이 제3의 기관이 제공하는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면 제3의 기관이 기존의 신용카드거래 승인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카드거래를 승인받는 방식이다. 이는 고도의 암호화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신용카드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상인도 소비자의 신용카드정보를 해독할 수 없어 상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와 상인이 모두 제3의 기관이 제공한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상인은 제3의 기관이 제휴한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현재 상용화된 암호화 방식의 대표적인 결제방법으로는 Cyber Cash사의 Cyber Cash Wallet이 있다.

III. 신용카드決済의 法的 性格

전자거래에 이용되고 있는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는 자명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와 큰 차이가 없다. 즉 인터넷상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는 신용카드정보와 거래정보가 개방된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된다는 점에서만 기존의 결제 방식과 다르다. 그러므로 인터넷상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에도 기존의 신용

카드 결제에서 발전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다음에서는 현재 지급결제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일반적 방식에 의한 3당사자카드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결제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카드會員과 카드加盟店 사이의 관계

소비자인 카드회원은 상인인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물건의 대금 또는 서비스의 보수를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지급한다. 이 때 카드가맹점은 카드회원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카드회원에게 계약상의 급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카드가맹점의 신용거래의무는 카드업자와 카드가맹점 사이의 가맹점계약에 근거한다. 여기서 카드업자와 카드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계약의 법적 성질이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중계계약과 유사한 무명계약이라는 견해와 카드업자와 카드가맹점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견해⁵¹⁾가 있다. 생각건대 신용카드가 카드회원에게 현금 없이도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수단으로 고안된 점을 고려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카드가맹점의 카드회원에게 대한 물건의 인도 또는 서비스의 제공은 카드업자에 대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된다.

2. 카드業者와 카드加盟店 사이의 관계

카드업자는 카드회원과 카드가맹점 사이의 원인관계에서 발생한 대금채권을 카드가맹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카드업자는 카드회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가맹점에게 계약상의 급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카드업자가 카드가맹점에게 카드회원의 대금채권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의 법적 성질이 문제로 된다. 이에 대하여는 카드업자가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매출전표를 송부 받음으로써 카드가맹점이 카드회원에게 갖고 있던 대금채권을 양수 받는 것이라는 채권

51 金亨培, “債權各論”, 「博英社」, 1998, 811면; 崔基元, 어음·手票法, 「博英社」, 1996, 670면.

양도설⁵²⁾, 카드회원이 카드가맹점에서 구입한 물건대금 채무를 카드업자가 인수하였다고 보는 채무인수설⁵³⁾, 카드업자는 카드회원이 구매한 물건대금을 대부해 줄 의무를 지며 카드회원은 물건 구입시 카드업자에게 그 차용금을 위탁하였다는 직접청구권설, 카드회원이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카드업자는 그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보증채무설이 있다. 여기서 카드업자가 카드회원의 대금채무를 카드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발생의 근거는 신용카드제도의 형태와 카드업자와 카드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진다⁵⁴⁾. 즉 카드업자가 카드가맹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카드가맹점이 카드회원으로부터 취득할 장래의 매출채권을 일괄 양수하는 것이며, 카드업자와 카드회원은 신용카드회원계약 체결시에 카드회원이 카드업자에게 가맹점과의 채권양도를 포괄적으로 승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카드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따라서 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카드업자의 대금채무 지급의무의 법적 성질은 채권양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카드業者와 카드會員 사이의 관계

카드회원은 카드가맹점에서 구입한 물건의 대금채무 또는 서비스 제공의 보수채무를 카드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카드업자와 카드회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신용카드회원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며, 그 법적 성질은 위임계약에 유사한 비전형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⁵⁵⁾ 그리고 카드업자는 대금채권을 개별적으로 추심하지 않고 보통은 1개월 단위로 모아서 청구하기

52 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1998, 285면; 金亨培, 전계서, 813면

53 다수설: 李銀榮, “債權各論”, 「博英社」, 1999, 392~3면; 鄭東潤, “어음·手票法” 「法文社」, 1998, 695면; 崔基元, 전계서, 876면.

54 崔基元, 전계서, 813면.

55 정진명, 전계 논문(인터넷상 신용카드 사용의 법적 문제), 9면.

때문에 대금채무의 법적 성질은 계속적 채권관계라고 할 수 있다.

IV. 인터넷상 신용카드決済의 法的問題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회원의 이름,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정보와 거래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인터넷상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는 이와 같이 전송상의 특징을 가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신용카드의 법률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술적 요소의 도입과 관련하여 보면 이러한 결제 방식이 항상 기존의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즉 기존의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에 있어서 카드가맹점은 고객이 제시한 신용카드를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업자로부터 카드거래를 승인 받음으로써 신용카드의 진정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매출전표에 카드보유자의 서명을 받아 카드회원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이와 같은 카드회원의 동일성, 신용카드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과정이 없으므로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시 원인관계에서 발생한 카드회원의 대금채권은 카드회원이 급부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므로 카드회원의 항변권을 보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신용카드정보 濫用의 危險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에 생각 가능한 법적 책임은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한 신용카드정보의 사용, 예컨대 무권한거래로 인한 불안정한 결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때 카드업자가 보상관계에 있는 카드회원에게 이미 지급한 카드회원의 대금채무를 구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카드업자는 급부실행관계에 있는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대금채권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1) 카드회원과 카드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1) 기본관계로서의 보상관계

카드회원이 카드가맹점에게 자신의 신용카드정보를 전송하면 카드가맹점은 카드업자에게 대금채권을 지급 청구하게 되며, 카드업자는 이후에 카드회원에게 동일한 금액을 구상 청구한다. 여기서 카드업자와 카드회원 사이에는 보상관계를 형성하는 일종의 위임관계가 성립된다⁵⁶⁾. 그러므로 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발행으로 카드회원에 대하여는 카드회원이 카드가맹점에게 부담하는 대금채무를 결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카드업자에 대한 카드회원의 반대급부는 신용카드 이용에 관한 연간 사용료액으로 존재한다.

카드업자가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카드가맹점에게 카드회원에 대한 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카드회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카드회원의 신용에 관한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카드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⁵⁷⁾ 이에 대하여 카드회원은 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으로 발생한 대금채무를 입금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만일 카드회원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카드업자에게 자신의 대금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드업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2) 신용카드남용에 대한 책임

신용카드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되는 경우 신용카드 정보의 남용을 둘러싼 위험은 다음과 같이 상정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신용카드 자체가 제3자에 의하여 위조·변조되어 사용되는 경우로 이는 기존의 신용카드거래에 있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 자체가 위조·변조된 경우 이로부터 발생한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56 金亨培, 전계서, 814면.

57 金亨培, 전계서, 660-661면.

대하여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카드회원의 신용카드정보 전송에는 카드회원의 유효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카드회원은 카드업자의 카드가 맵점에 대한 결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⁵⁸⁾ 이에 대하여 카드업자가 신용카드를 주의 깊게 심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변조를 발견할 수 없었고, 또한 위조·변조가 고객의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카드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견해이다.⁵⁹⁾ 그러나 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주의 깊게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정보가 기술적으로 위조·변조될 수 있으며, 또한 신용카드의 위조·변조로부터 발생한 손해가 카드회원의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당연히 할 수 없다. 오히려 신용카드를 현금 없는 거래에 도입한 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위조·변조를 방지할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카드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래승인을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변조·위조에 대한 위험은 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6조 제3항) 후자의 견해는 현재의 법률규정에 맞지 않는 이론이다. 만일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등의 위조 또는 변조 등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⁶⁰⁾을 입증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 등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 등과 체결한 때에는 당해 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동조 제4항). 그러므로 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게 매출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동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한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동조 제5항).

둘째, 신용카드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어 무권한자가 본인의 신용카드로

58 정채영, “어음·手票法강의”, 「고시연구원」, 1998, 168-169면.

59 정진명, 전제논문(인터넷상 신용카드 사용의 법적 문제), 13면.

60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8에서 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
2.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의 제공

결제하는 경우이다. 전자거래에 있어서는 신용카드의 제시나 본인의 확인, 서명의 대조 등 통상적인 확인절차가 모두 생략되므로 부정사용의 위험이 크다. 이 경우에 무권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정보가 본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카드회원 본인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⁶¹⁾ 왜냐하면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와 그에 대한 정보를 주의 깊게 관리하였으며, 또한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러한 신용카드정보가 전송되었다는 권리와관을 발생시키지 않은 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책임법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제3자가 신용카드정보를 남용하는 경우에 카드업자는 카드회원의 유효한 지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회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⁶²⁾ 즉 카드업자의 카드회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은 신용카드가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남용된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게 카드남용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시키기로 하는 특약은 신의칙에 반한다. 그 이외에도 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 대하여 사무처리에 의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정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 신용카드계약상의 의무를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침해하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은 카드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부담한다. 이 경우에도 역시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입증책임은 카드업자에게 있다.

(2) 카드업자와 카드 가맹점 사이의 법률관계

1) 기본관계로서의 급부실행관계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가 현금대체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카드가맹점은 현금지급으로서와 같은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기대한다.⁶³⁾ 이러한 법적 지위는 카드가맹점이 일정한 요건하에서 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가맹점계약에 의

61 정쾌영, 전제서, 169면; 鄭東潤, 전제서, 697면.

62 정진명, 전제 논문(인터넷상 신용카드 사용의 법적 문제), 13면; Taupitz, "Kreditkartenmissbrauch: Thesen zur zulässigen Verteilung des Haftungsrisikos in AGB", NJW 1996, s.219.

63 Taupitz, a.a.O., s.219.

하여 보장된다. 가맹점계약은 고객유치계약으로서 카드업자가 대가관계에서 근거지워진 카드회원의 금전채무를 카드가맹점에게 변제할 의무를 지운다.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에 있어서 카드업자는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규정에 맞는 매출전표가 작성되고, 매출전표가 신용카드와 일치하며, 어떠한 특별한 의문의 요소가 없는 서명이 매출전표에 기록된 경우에만 계약의 구속력을 부담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에 있어서는 매출전표가 작성되지 않고 서명 역시 기록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당한 차별대우가 행해져 왔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통하는 범죄행위가 빈번하였다.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결제에 있어서 매출전표의 작성행위 없이도 신용카드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매출전표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카드거래의 성립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동법 제19조 및 제70조)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2) 신용카드 남용에 대한 책임

기존의 법규정으로는 카드업자와 카드가맹점 사이의 급부실행관계에 있어서 카드가맹점은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정보의 전송에 대하여 카드업자로부터 전혀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였으나, 개정 법률은 매출전표의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거래의 성립만으로 결제의 성립을 인정하여 법 제 17조의 카드부정사용에 대한 규정을 신용카드에 의한 전자결제에도 적용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손실에 대해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2. 카드會員의 指示撤回

(1) 지시철회의 법리

신용카드거래에 있어서 카드회원이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면 카드가맹점은 이를 카드업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반환 청구한다. 그러면 카드업자는 카드회원의 지급가능성과 무관하게 카드회원과 카

드가맹점 사이의 대가관계에서 발생한 카드회원의 금전채무를 카드가맹점에
 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카드회원의
 매출전표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진정한 지시라는 견해⁶⁴⁾와 사무처리계약
 상의 지시로 보는 견해⁶⁵⁾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카드회원이 매출전표에 서
 명한 지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카드회원이 매출전표에 대한 서명으로 카드업자에게 부여한 지시를
 이후에 다시 소멸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된다. 여기서 전자의 견해는 카드
 업자가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급부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즉 카드가맹점은 카드업자에 대하여 의욕한 무조건적인 현금 유사
 의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철회권의 유보하에 대금청구권을 가진다고
 한다. 즉 카드회원의 지시권은 대가관계의 흠결시에 카드회원이 카드업자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그러한 지시는 철회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후자의 견해는 신용카드거래의 성격을 고려하여 급부의
 이행 이전에도 지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즉 카드업자는 카드회원
 과 체결한 신용카드회원계약에서 카드회원의 지시 이전에 이미 카드가맹점
 에 대한 지급약속을 부여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카드회원이 매출전표에 서
 명한 시점에 카드회원의 지시와 카드업자의 카드가맹점에 대한 의무가 동시
 에 발생하므로 지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견해는 카드업자의 카드가
 맹점에 대한 지급을 카드업자에게 부여된 신용카드회원계약에 의한 지시, 즉
 사무처리계약상의 지시라고 한다. 생각건대 카드가맹점은 카드업자가 카드회
 원으로부터 발생한 금전채무의 지급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카드회원에
 게 현금 대신 신용카드 지급을 허용한다. 만일 지시의 자유로운 철회를 인정
 하는 경우 카드가맹점은 현금지급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
 로 신용카드 지급을 회피하게 된다. 그러면 카드업자는 중요한 범위 내에서
 카드가맹점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가능한 한 자신의 신
 용카드를 자유롭게 이용하기를 원하는 카드회원의 이익에 반한다. 그러므로

64 정진명, 전제 논문(인터넷상 신용카드 사용의 법적 문제), 18면.

65 정진명, 상계 논문, 18면.

지시의 철회는 대가관계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예컨대 방식위반으로 유효한 승낙이 흠결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카드회원의 지시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업자에게 있다.

(2) 전자상거래에서의 지시철회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카드가맹점은 카드회원의 신용카드정보를 수신함과 동시에 카드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 청구하게 되며, 카드업자는 이후에 카드회원에게 동일한 금액을 구상 청구한다. 여기서 인터넷을 통한 통상적인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가맹점의 카드회원에 대한 통제는 요구된 신용카드번호가 사실상 적절한 유효기간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즉 카드가맹점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동일성 또는 권한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카드회원이 카드가맹점에게 신용카드정보를 송신하는 시점에 거래당사자들 사이에는 3당사자관계가 형성되므로 매출전표에 대한 서명과 무관하게 카드가맹점의 카드업자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러한 청구권은 카드회원의 유효한 지시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카드회원의 카드업자에 대한 지시는 신용카드정보의 전송 이후에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소비자의 컴퓨터 조작실수에 따른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약이나 거래대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지시철회를 할수 있다고 본다.

제5장 신용카드에 의한 電子決濟의 信賴性 確保方案

I. 電子商去來事業者의 要件強化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거래사업자”라 함은 전자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고, 전자거래사업

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사업자에 접속하여 거래를 하고자 할 때, 기존의 거래를 행하던 업자들이 전자상거래업을 병행하여 하는 경우와 개인이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독립적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경매사이트 등을 통해 상품을 등록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 거래를 할 때 과연 소비자들이 그들의 제품이나 신용을 믿을 수 있을까?

LG경제연구원은 “국내 인터넷 소매시장 현황”이라는 자료를 통해 2001년 이분야 시장 규모가 2조3천억-2조7천억원에 이르고, 통계청은 인터넷 쇼핑몰 업체수가 2천1백35개로 2000년에 비해 15%가량 늘었다고 발표했으며, 한국통신판매협회는 2002년 3월 보고서에서 “PC 보급을 통해 급성장한 전자상거래 시장은 향후 가장 큰 신장세가 예상되는 분야”라면서 “인터넷 쇼핑몰은 저렴한 가격체계와 편리함으로 인해 다른 소매업종의 시장을 급속히 잠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⁶⁶⁾ 이처럼 앞으로의 모든 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전자상거래사업자에게 소비자보호책무와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강구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등 기본적인 규율을 하고 있으나 내용이 추상적이고 처벌 등 규제조항은 전무한 실정이고, 특히 인터넷 경매사이트 개설에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어 누구나 경매사이트를 개설·운영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소비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업자들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현재 B2B거래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전자상거래보증제도⁶⁷⁾를 B2C거래에도 적용하여 전자상거래사업자에게 공인 인증

66 인터넷 뉴스, <http://news.daum.net>, 2002년 3월 20일.

67 신용보증기금은 기업간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결제 자금의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인증서를 그 인증기준과 함께 소비자가 거래를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였을 때 거래약관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중요한 내용은 주문양식서 화면이나 계약 체결 화면에 함께 표시하고, 일정한 링크를 통해 추가 설명하거나 강조된 글꼴로 소지자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이버거래의 불확실성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II. 電子支給結制代行業者 役割

1. 電子支給決済代行業者의 概念

전자상거래에서의 결제대행(Payment Gateway: 이하 PG)이란,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결제를 행할 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신용카드 조회와 대금 결제를 대행해 주는 신개념 서비스를 말한다.⁶⁸⁾ 보통 해킹이나 신용카드 정보 누설 위험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 해 결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 쇼핑물의 증가 속에 결제대행 기관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가맹 쇼핑몰과 거래 금액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 電子支給決済代行業者의 役割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2002. 3. 30 공포, 2002. 7. 1 시행)에 따르면 PG를 신용카드 가맹점의 한 유형으로 범규범 내에 편입하여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01.9월부터 전자상거래 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재정경제부 공보관실 자료 참고)

68 로앤비 법령자료실, http://www.lawnb.com/lawinfo/info_law_main.asp?gid=10000001&cd=1&strcd=1

를 대행하는 자”(제2조 제5호 나목)로 결제대행업자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다.

결제대행업자는 인터넷 쇼핑물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용정보와 카드거래 대행 내역을 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카드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쇼핑물의 상호, 주소 등을 공개토록 하고, 주문과정이나 물품에 하자가 생길 경우 카드회원에 대해 주문취소, 환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앞으로는 결제대행사를 가맹점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거래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법에서는 ①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②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③ 신용카드 등의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제19조 제4항 제1호, 제4호, 제5호), ④ 신용카드 거래시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제19조 제2항)등과 관련된 일반 가맹점의 의무가 결제대행업자에는 면제됨으로써 일반의 신용카드가맹점과 구분하고 있다.

III. 신용카드決済에서의 電子署名의 擴大

1. 暗號化된 신용카드의 使用擴大

신용카드결제시스템에 암호화 방식은 소비자와 상인 모두 제3의 기관이 제공한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상인은 제3의 기관이 제휴한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 인터넷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에는 이런 암호화 방식이 아닌 일반적 방식, 즉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

비스를 제공받을 의사를 표시하면서 카드가맹점에게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결제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전자결제를 할 때에는 많은 법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암호화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신용카드시스템의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전자결제의 무결성, 진정성⁶⁹⁾, 기밀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電子署名을 이용한 신용카드 決済의 法的問題 解決

(1) 기술적 배경 및 기능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에 있어서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기존의 신용카드거래와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즉 고객이 상대방에게 전송한 신용카드정보가 제3자에 의하여 인지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신용카드정보에 대한 신뢰성 문제, 제3자가 전송된 정보를 내용적으로 변경할 위험에 대한 무결성 문제, 수신자가 수신한 신용카드정보가 진정한 발신자로부터 발송된 것인지 또는 전체가 제3자에 의하여 도용되었는가의 진정성 문제, 수신된 신용카드정보가 진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정보가 진정한 카드보유자에 의한 것인가의 동일성 문제가 있다.⁷⁰⁾

첫째, 신용카드정보가 개방된 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됨에 따라 신용카드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기존의 결제방법에 비하여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전자거래에서는 신용카드정보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기밀성

69 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하면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 생성키로 전자서명을 한 경우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러한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당해 전자서명이 당해 전자문서의 서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고 전자서명 이후에 내용변경이 없었다는 추정을 하는데 이는 전자문서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일반거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문서에 의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70 孫晉華, 전제 논문, 248-249면.

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기밀성 확보를 통한 결제의 신뢰성 문제는 신용카드 정보의 암호화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전자거래에는 SSL프로토콜 또는 SET프로토콜을 이용한 비대칭 암호화 방식(asymmetric Cryptosystem) 또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사용된다. 전자거래에 있어서 권원 없는 자의 정보 남용은 이러한 신용카드정보의 암호화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에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디지털신호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변경이 수월하고, 특히 전송되는 신용카드정보가 수신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무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객이 송신한 문서내용과 상대방이 수신한 문서내용이 서로 일치한다는 무결성이 문제로 되는데, 이는 원래의 정보의 변경을 인식할 수 있는 전자서명의 사용으로 막을 수 있다.⁷¹⁾ 즉 전자서명은 송·수신하는 전자문서가 서명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이것이 전송·저장되는 과정에서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신용카드정보 변경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전자거래에 있어서 전자문서는 그 원본과 사본,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을 구별할 본질적 특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정보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전자서명과 인증제도는 이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즉 전자서명과 인증제도⁷²⁾는 당사자간 거래를 위하여 표시된 전자문서의 전 내용을 인증기관에 남게 하므로, 특히 카드보유자의 패스워드를 도용하거나 해킹 등의 방법으로 발신이 행하여진 경우 당해 전자문서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거래당사자는 상대방이 실재하고 또한 그가 거래에 대하여 정당한

71 Engel-Flechsigt/Maennel/Tettenborn, "Das neue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Gesetz", NJW 1997, 2988f.

72 전자서명법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업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의 안전운영 여부의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동법 제18조의3 및 제19조 제2항, 제3항).

권원을 가진 자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기존의 거래에 있어서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확인 및 기명날인 등의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러한 방법은 전자거래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전자거래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확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PIN의 조회, ID와 Password의 조합, 전자서명이 고안되었다. 현재 전자서명과 이를 인증하는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가지고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상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에 있어서도 카드보유자의 동일성 문제는 전자서명 및 인증서로서 해결할 수 있다.

(2) 신용카드의 남용에 대한 카드업자와 카드회원의관계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정보가 제3자의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암호화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회원에게는 신용카드정보의 입력에 근거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암호화된 신용카드에 있어서 정보의 불안정한 입력은 제3자가 이러한 정보를 포착하여 남용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카드회원에 대한 어떠한 주의의무도 근거지우지 않는다. 이와 같이 카드회원이 자신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에 어떠한 유책사유도 없으면 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사용정지 이전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가 본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로 전자서명을 하여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진정성과 무결성이 추정되며, 전자문서의 내용과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그러므로 서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후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소멸시키지 않는 한 카드회원은 서명된 전자문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전자서명법 제17조 제1항 참조).

(3) 신용카드남용에 대한 입증책임

카드업자와 카드회원 사이에서 암호화된 신용카드 사용은 무엇보다도 입증법상 의미가 있다.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정보를 전자서명한 후 전송한 경

우에 이는 제3자의 신용카드 남용에 대하여는 일용의 증명이 되며, 또한 카드업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지우는 카드회원의 유효한 일방적 지시로도 간주된다. 왜냐하면 전자서명은 실제로 모조될 수 없으며, 또한 원칙적으로 카드회원에게만 인식되며 그 사용은 개별적인 ID를 통하여 보호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정보가 제3자에 의하여 남용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카드회원은 이러한 간접증명을 깨뜨려야 한다⁷³⁾. 여기서 제출되어야 할 간접증명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암호화된 신용카드정보의 전송은 카드회원 자신이 행한 것이므로 카드회원은 자신이 신용카드정보를 전송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제3자가 신분확인번호를 어떻게 인지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간접증명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카드회원이 이러한 간접증명을 깨지 못하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카드회원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간접증명은 신용카드정보의 전송이 카드회원의 신용카드와 전자서명에 의하였다는 것이지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전송이 행하여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암호화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제3자의 남용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는 카드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생각건대 신용카드를 일반적 방법으로 전송한 경우 신용카드정보에 대하여 최소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안전조치가 없으므로 남용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카드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카드회원은 신용카드정보가 전송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시 그 자체가 자신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출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암호화된 신용카드의 경우 제3자가 권한 있는 카드회원의 행위가 없이 암호키를 인지할 수 없

73 2000년 6월 30일 개정된 독일민법은 제676조 h에 “금융기관은 지급카드 또는 그 카드자료가 제3자에 의하여 남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카드 또는 자료의 사용에 대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급카드가 지로계약이 아니라 다른 사무처리계약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제1문은 카드발행인에 대하여 준용된다”고 규정하여 지급카드의 남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Lorenz, “Im BGB viel Neues : Die Umsetzung der Fernabsatzrichtlinie”, NJW 2000, s.843).

으므로 카드회원은 암호키를 과실 없이 보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카드회원이 제3자의 남용에 대한 간접증명이 성공하는 경우에도 재차 카드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문제로 된다. 즉 카드회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암호화된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되는 경우 무엇보다도 카드회원의 컴퓨터 및 전자서명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고려된다. 이러한 사정은 PIN을 가진 신용카드의 사용과 비교된다. PIN의 비밀유지의 측면에서 카드회원에게 일정한 주의의무가 성립되는 것처럼 이러한 주의의무는 카드회원의 전자서명을 침해하는 패스워드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도 요구된다. 카드회원이 패스워드를 신용카드와 함께 보관하는 경우 그에게는 신용카드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즉 카드회원은 카드업자에 대하여 계약상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카드회원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패스워드를 비밀리에 유지하여야 할 보관의무를 준수한 경우 제3자에 의하여 그러한 권원 있는 표지가 확실히 남용된 때에는 간접증명은 이를 카드회원의 보관의무 위반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전자서명법 제21조에 따라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카드회원이 인지하여 그 사실을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하였을 때에는 그러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카드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최고액을 제한하든지 아니면 보험제도를 통하여 손실을 전보해 주는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만일 책임최고액이 도입되는 경우 책임 있는 사유의 각 유형에 따라 책임을 달리 구성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4) 신용카드 남용에 대한 카드업자와 카드가맹점과의 관계

암호화된 신용카드는 카드보유자의 동일성과 권한에 대한 인증에 기여하며, 제3자에 의한 신용카드정보의 남용을 배제한다. 또한 이는 신용카드정보의 온라인 인증을 관철하며, 카드가맹점은 동시에 카드업자로부터 적극적으로 인증을 확인 받는다. 이와 같은 결제의 자동화는 카드가맹점이 카드회원에 대한 자신의 급부를 이행하기 위한 조건이다. 그러므로 암호화된 신

용카드 결제에 있어서 시스템상 서명된 매출전표의 심사는 불필요하며, PIN을 가진 신용카드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카드가맹점의 매출전표에 대한 심사의무도 현저히 감소된다. 나아가 전자서명의 모사위험은 통상 서명된 매출전표에 있어서보다 낮다. 그러므로 서명된 매출전표를 사용하는 통상의 카드사용과 비교하여 암호화된 신용카드의 사용은 남용의 위험이 사소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카드업자의 카드가맹점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결제가 온라인상 발생하는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카드업자가 그 지급을 후발적으로 거절하는 경우 그는 선행사실에 반하는 모순된 행위를 행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는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당사자의 이익에 반한다. 또한 동일한 근거로 카드업자가 이러한 지급의무를 약관으로 제한하는 경우 그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

(6) 암호화된 신용카드의 지시철회

일반신용카드와는 달리 암호화된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당사자 각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제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암호화된 신용카드에 있어서 카드업자는 그 사용에 있어서 카드회원과 카드가맹점을 위하여 무결성을 가지는 개방된 표준을 갖추어야 하며, 카드회원과 카드가맹점은 카드업자의 결제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상호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카드업자의 인증절차를 통하여 카드회원은 거래상대방인 상인이 카드업자의 자동화된 계약의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가맹점은 카드회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암호화된 신용카드의 결제에서는 카드회원의 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정보의 전송 속에 카드업자에 대한 지급 지시가 내포되어 있다. 즉 카드회원의 신용카드정보의 전송과 동시에 카드업자에 대한 지시의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어 카드회원은 이후에는 지시를 철회할 수 없게 된다. 단, 신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

부터 해당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⁷⁴⁾ 지시철회가 유보될 수 있다고 하겠다.

IV. 電子認證에 의한 신용카드 決済

1. 電子認證의 必要性

옛날 사람들은 상대방을 알아보는 수단으로 칼이나 동전을 미리 두 개로 쪼개어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훗날 이를 맞춰 봄으로써 서로의 신분을 인증했다고 한다. 고구려 시조인 주몽이 부여국을 떠나올 때 남긴 칼 한조각을 아들 유리가 갖고 찾아오자 자신의 칼과 맞추어 보고는 크게 기뻐하여 유리를 적자로 인증하여 태자로 삼았다는 고구려 건국설화를 보더라도 인증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인증도 형식만 다를 뿐이지 원리는 옛날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전자상거래나 인터넷뱅킹 등 사이버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거래에서는 그 전자적 속성으로 인해 ID도용이나 해커의 공격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자인증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고도의 암호화 기술이 개발, 응용되고 있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기호나 숫자의 조합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전자인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완벽하게 확보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전자서명법에서는 정부로부터 공인된 인증기관이 인증을 받고자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제15조)고 규정하고

7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참조

있다. 그러나 모든 전자상거래 당사자들 특히, 인터넷 쇼핑몰이나 경매사이트의 개인 상인들은 굳이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인증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신뢰성의 문제는 여전히 산재해 있다.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식정보의 활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증기술은 더욱 발전될 것이며, 또한 거래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전자상거래업자의 요건강화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신청에 의해서가 아닌 인터넷쇼핑몰등의 전자상거래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시 인증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2. 신용카드에 의한 電子決済시 電子認證의 必要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업자, 가맹점 그리고 신용카드회원사이에서만 암호화된 전자서명으로 인증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신용카드회원의 상거래 관련정보와 신용카드 관련 정보 즉, 서명 및 개인신상정보를 인증기관에 전송하여 공인된 인증기관의 전자인증시스템을 통해 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불중개업체 등 쇼핑몰과 카드사를 연계하는 중간 단계 없이 카드사에서 바로 회원에게 인증하기 때문에 개인 신용 정보의 유출 위험과 카드도용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식정보의 활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현재 널리 쓰이는 암호화 기술의 대체기술로 생체인식(biometric)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생체인식은 말 그대로 사람의 지문 홍채 등 생체적 특성을 이용해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자인증이 갖고 있는 도용이나 해킹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미국의 IT전문 조사기관 가트너그룹은 세계 생체인식시장이 앞으로 매년 두배 정도씩 신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한국을 위

시한 아시아시장은 매년 30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체인식기술이 발전해 전자인증에 완벽하게 응용될 수 있다면 ID나 암호를 외우고 있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다행한 일은 지금까지 기호화된 인격만이 존재했던 사이버공간에서 생체인식기술은 휴머니즘이란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점이다.⁷⁵⁾

제6장 結論

전자상거래는 더 이상 백화점 세일기간에 차와 사람으로 북적이는 백화점을 헤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들의 일상 생활이 되어가고 있다. 혹 근처에 큰시장이나 백화점, 전문 상가가 있는 도시가 아니더라도 마치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쇼핑을 즐길 수 있다. 기업에서는 상품 전시, 홍보, 판매와 관련된 소요 인력과 간접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고, 또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하므로, 더 낮은 가격에 팔면서도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된다. 기업간 구매 및 판매 과정에서도 전화팩스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일들을 컴퓨터의 도움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전자상거래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불 및 보안문제가 해결된다면, 일반인들 및 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이용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이 급속히 성장한 이후 많은 기업들이 웹(web)사이트 개발에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전자상거래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원활한 전자결

75 한국전자거래진흥원 “[IT단상]전자거래와 인증” 2002.10.7. 네이버 뉴스.

제는 향후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와 전자결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와 전자결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어려움이 없이 사용되어야만 전자상거래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금까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화폐, 전자수표, 신용카드, 전자자금이체방식의 전자결제방법중 신용카드에 의한 전자결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첫째 제3자에 의한 신용카드의 위조·변조, 둘째 신용카드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어 무권한자가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셋째 암호화된 신용카드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가 본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로 전자서명을 하여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험도 방지하면서 신용카드에 의한 전자결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우선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방안이 있다. 관계 당사자간의 명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결제로서의 실효성 확보인데 관련법과 거래관행에서의 전자결제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카드사업자, 전자상거래사업자, 금융기관의 컴퓨터시스템의 안전성이 평가되어야 하는데 전자결제상의 시스템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암호화 기술의 고도화와 보급인데 암호화 관련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전세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인증기관 활용 및 요건강화인데 신용카드에 의한 전자결제에도 공인된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요건을 강화하여 인증업무의 안전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다섯째, 엄격한 PIN 관리이다. 이는 PIN 즉, 패스워드, 비밀번호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만 최소한의 보안이 강구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여섯째, 전자결제나 전자자금이체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법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러한 전문가를 전자상거래의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인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⁷⁶⁾.

76) 최석범, 전제 논문, 362면.

< 참고 문헌 >

1. 국내 문헌

- 金亨培, 債權各論, 博英社, 1998.
- 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1998.
- 오병철, 電子去來法, 法源社, 1999.
- 李銀榮, 債權各論, 博英社, 1999.
- 鄭東潤, 어음手票法, 法文社, 1998.
- 정쾌영, 어음수표법강의, 고시연구원, 1998.
- 崔基元, 어음手票法, 博英社, 1996.
- 최경진, 電子商去來와 法, 현실과 미래, 1998.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IT단상]전자거래와 인증", 2002.10.7.
- 김윤명,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구현의 제반과제", 사이버스페이스포럼, 1997.
- 김영갑, 최성준, "정보사회에 대비한 상사법 연구 서설",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I)(과천사;통신개발연구원), 1997.
- 홍준형, "인터넷 사회에 있어서의 EDI 및 전자거래의 기능", 전자거래 및 EDI 관련 법 제도 정비방향(서울;한국전산원), 1996.
- 심충건, "손에 잡히는 CALS", 정보시대, 1996.
- 한국전산원, "CALS/EC 도입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서울:한국전산원), 1996.
- 오병철, "전자거래의 민사법적 규율방안", 정보사회에 대한 일반법 연구(II), 1998.
- 정완용,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법제의 검토와 입법방향",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서울;국회가상정보가치 연구회), 1997.4.22.

- 김진환,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문서성과 서명성에 관한 고찰”, 법조, 1998.8.
- 김진우, HCL Lab, “인터넷 비즈니스.COM”, 영진출판사, 1999.
- 심상렬, “사이버 무역의 비즈니스 모델 현황 및 전망”, 2000년하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한국통상정보학회), 2000.6.
- 윤한성, 이재규, “Intelligent Agent Based Virtually-Defaultless Check System : Safe Check System”,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 Commerce(서울 ; 국제전자상거래 센터)」, 1998.
- 허금, “국내쇼핑몰 사업의 허실”, 경영과 컴퓨터, 1999.
- 최인영, “전자상거래혁명”, 동일출판사, 1998.
- 공형진, 김영철, “전자상거래의 민사법적 문제”, 동의법정 제15편, 1999.
- Jinee Kim Wilde, “Contract And Licensing Trade”, 「제4회 KITAL 정기 국제심포지움-사이버시대의 법적 환경-」, (서울 : 기술과 법 연구소), 1999.
- 정국환, “전자거래 및 EDI 관련 법제도 정비방향연구”, 한국전산원, 1996.
- 최석범, “전자결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중재학회지, 1998.
- 성기윤, 인터넷전자지불시스템의 현황“, 한국과학기술원 인터넷상거래 연구, 2000.
- 윤광운 외2인, “전자상거래론”, 삼영사, 1999.
- 한국은행자료, “전자화폐의 영향과 대응방향”, 시사금융 vo:12-3, 1996.
- 권용오, “전자상거래에서의 법적인 문제점”, 한국무역협회자료실, 2000.
- 정진명,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인터넷법률(법무부), 2001년 제4호.

- 손달호, “전자상거래에 있어 SET이론의 활용”, 계명대학교 경영경제, 1998.
- 이제규, 양철영, “전자상거래와 IC카드 통합서비스”, 컴퓨터월드, 1997.
- 윤명길, “국내인터넷 쇼핑몰의 전자결제 유형 분석”, 한국마케팅과 학회, 1999.
- 정진명, “인터넷상 신용카드 사용의 법적 문제”, 인터넷 법률(법무부), 2001년 제5호.
- 김경태, “신용카드거래의 범리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7.
- 손진화, “새로운 전자지급제도의 법률문제와 입법론”,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연구(II)(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 정윤희, “전자상거래 지불 시스템과 인증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논문」, 2002.

2. 외국문헌

- Lorenz, “Im BGB viel Neues : Die Umsetzung der Fernabsatzrichtlinie”, NJW 2000.
- Engel-Flehsig/Maennel/Tettenborn, “Das neue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Gesetz”, NJW 1997.
- Taupitz, “Kreditkartenmissbrauch: Thesen zur zulässigen Verteilung des Haftungsrisikos in AGB”, NJW 1996.
- Andrew Dahl & Leslie Lesnick, “Internet Commerce”, New Riders, 1996.
- Gray Schneider & James T. Perry. “Electronic Commerce”. Thomson Learning. 2000.
- 原田 保, 寺本義也, “인터넷시대 전자取引革命”, 「東洋經濟」, 1996.

3. 참고사이트

<http://news.daum.net/>

<http://www.nso.go.kr/cgi-bin/>

<http://lawnb.com/lawinfo/>

<http://www.ecclass.co.kr/>

<http://news.naver.com/>

<http://user.chollian.net/~infolaw/>

<http://www.kcals.or.kr/>